2020년도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0. 10. 12.(월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3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선임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762건(안건번호 제2020-131025호 ~13199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131025호~131032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1033호~131034호는 블로그에서 34개 음악저작물의 ‘리믹스’를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방식으로 각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들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1035호는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할 경우 불법복제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다수 이미지가 함께 전송중단되는 문제가 있는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함.

  안건번호 제2020-131036호는 음악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건으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1996호~131999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으로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746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3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선임: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6쪽의 심의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임.

- B 위원: 동의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다른 부분은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공개해도 무방할 것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심의대상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선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KBS2', '싸이더스', 'Warner Bros. Pictures', '넷플릭스', '미국 FOX', '미국 Showtime', '애니플러스', '일본 AT-X', '영국 Sky One'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선임: 금일 심의안건은 41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76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2020-131025호~13199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25

호~131032호는 실명의 민원인 2인이 각각 불법복제물 신고도구를 이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된 출판, 만화 불법복제물을 신고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1025호~131032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C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사안으로, 가결함.

- A 위원: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영리 목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소설, 만화 불법복제물로서 이견 없이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025호~131032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33호~13103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이용자가 가요 리믹스 음원을 제공한 사안으로, 안건번호 제2020-131033호와 제2020-131034호에서 제공하는 음원은 동일함. 총 34곡의 한국 댄스음악 저작물을 각 약 1절 분량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1분 가량의 인트로와 효과음, 연결부 등을 넣어 편집한 것임.

  (안건번호 제2020-131034호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재생하면서)먼저 안건번호 제2020-131034호는 문제가 되는 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 본문 하단에는 안건번호 제2020-131033호 게시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설정되어 있음.

  링크를 통하여 이동한 안건번호 제2020-131033호는 문제가 되는 음원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있으나, 안건번호 제2020-131034호 게시물에 "☆☆☆☆☆☆☆☆☆☆☆☆☆☆☆☆☆☆☆☆☆☆☆☆"라고 힌트가 있어 인터넷 검색을 하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음.

  복제·전송자는 "★★★★★★★★★★★★★★★★★★★★★★★★★★★"이라 밝히고 있어 각 안건 음원의 제작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해당 리믹스 음원 자체의 정보 및 판매되는 합법 시장은 확인할 수 없었음.

  2017. 11. 6. 개최된 제1분과위원회의 제2017-176회 심의에서는 총 4분의 음원 중 후렴구의 약 1분 정도를 편집 게시하여 복제·전송한 안건에 대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고, 편곡에 대하여는 최근 형사판결에서 포크음악을 트로트메들리로 편곡한 저작물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하였던 바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1033호~13103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일반적으로 짜깁기한 음원의 경우 원저작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사용하는 것인지?

- 오진해 선임: 그러함. 예를 들어 유튜브에 올라온 짜깁기 음원의 경우에도 각 곡마다 COTENT ID가 부착되어 있음.

- A 위원: 리믹스한 음원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논외일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선임: 그러함. 다만 금번 안건의 경우 해당 리믹스 음원 게시자가 음원을 직접 제작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광고가 붙어 있어 영리 목적으로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작지 않음.

- A 위원: 해당 안건의 경우 리믹스 음원의 게시 목적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인지는 명확하지 않음.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라도 하더라도 블로그

에 게시함으로써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또한 재편집에 사용된 음원의 사용 분량 등을 보았을 때도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B 위원: 음악저작물의 대표적 구절을 편집, 게시하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복제·전송권을 침해한 사안으로,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033호~131034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35호~131036호는 밴드에서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스티커 이미지 파일, 음원 파일임.
  안건번호 제2020-131035호는 애니메이션 스티커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로 신고한 건임. 애니메이션 스티커는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을 지칭하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업로드 된 밴드는 '누구나 밴드를 검색해 찾을 수 있고, 밴드 소개와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음. 민원인이 권리를 주장하는 이미지 파일은 사진첩에 게시가 되어 있는데,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진첩에 있는 이미지는 볼 수가 없음.

- B 위원: 사진첩에 이미지는 그림 파일로 저장이 되었다가 ○○○○

등 아무데서나 사용할 수 있는지?

- 오진해 선임: 그러함.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모티콘과 똑같지만, 사실은 사진을 올리는 것과 같음.
  사진첩에는 2020. 9. 29. 기준 13,556건의 사진이 등록되어 있으며, 전체 사진첩에 대한 url은 1개이고, 복제·전송자가 추측될 뿐 정확히 특정되지 않음. 본건 24개 미술저작물에 대한 삭제 또는 게시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url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정권고의 특성상 그 내용 및 불법복제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13,556건의 사진저작물 전체가 게시중단됨. 이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1035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전체 사진첩에 대한 url은 있으나 사진첩에 직접 게시된 개별 사진에 대한 세부 url은 없다는 것인지?

- 오진해 선임: 그러함.

- C 위원: 민원인은 24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자이지, 사진첩 전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선임: 사무처에서는 다른 사진들이 전부 이모티콘인지 저작권 문제가 없는 사진인지 알 수가 없음.

- A 위원: 해당 건은 저작권 침해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시정권고가 url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은 민원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일 것으로 보임.

- B 위원: url 중 해당하는 건에 대해서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url 단위로 시정권고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결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A 위원: 위법성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개별 url을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바, 전체회의에 회부하여 추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 C 위원: 민원인이 특정을 하지 않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가 되는 사진에 대한 url은 분명히 존재함.

- 오진해 선임: 해당 밴드를 직접 확인한 모니터링 담당팀에서는 세부 url이 없다고 하며 전체 url에 대해 심의를 요청함.

- C 위원: 저작물성 인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함께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전체 회의에 회부하여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B 위원: url 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는 시정권고의 특성상 불법복제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다수 사진저작물 전체가 게시중단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부결 의견이나, 시정권고 제도의 실질적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전체회의에 부의함이 타당해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035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36호는 ‘●●●●●●’에서 ‘◎◎◎◎◎◎◎◎◎◎◎◎◎◎◎◎◎◎◎◎◎◎◎◎◎◎◎◎◎◎◎◎◎◎◎◎◎’ 등 다수의 음원(mp3 파일)을 압축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밴드명만으로는 해당 밴드 자체는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승인 가입제이긴 하나 이미 회원이 5,000명이 넘는 대형 밴드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1036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해당 밴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올린 것이 여러 건인지, 아니

면 단건인지?

- 오진해 선임: (보호원에서 제출한 채증자료를 제시하면서)사무처에서는 해당 밴드에 가입하지 않아 따로 확인할 수 없었으나, 채증자료 우측 상단의 최근 게시물 목록을 보시면 다른 불법복제물도 공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A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가결의견이나 모니터링 담당팀에서 폐쇄형 밴드 내 다른 불법복제물의 공유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해준다면 심의에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C 위원: 이견없음. 밴드 자체는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개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누구나 밴드명을 검색하여 접근이 가능하고 비록 승인 가입제라 하여도 이미 회원이 5,000명이 넘는 대형 밴드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일반적인 온라인서비스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어 보임.

- B 위원: 회원이 5,000명이 넘는 대형 밴드인 점, 민원인이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03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996호~131999호는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것임. 안건번호 제2020-131992호~131995호와 동일한 건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131996호~13199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996호~131999호는 부결함.

- 오진해 선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37호~131995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게임, 출판물, 컴퓨터 프로그램, 만화, 영상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게임 '헤비 레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37호는 퀀틱 드림에서 제작하고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게임 '헤비 레인'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63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글로벌 게임 플랫폼인

스팀에서 2020. 6. 18. 출시되어 정품은 19,900원에 판매되고 있음.
(게임 '디스코 엘리시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056호는 에스토니아의 인디 게임개발사 ZA/UM에서 제작·배급한 게임 '디스코 엘리시움'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1,2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19. 10. 16.에 출시되어 정품은 41,000원에 판매되고 있음.
(출판 '정복군주 대인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142호는 소설 '정복군주 대인선'이 웹하드 사이트에서 3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작가는 '슬라임2세', 출판사는 '원티드'임.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 미스터블루 등에서 1화당 100원에 영구소장 가능한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음.
(방송 '비밀의 숲2'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450호는 tvN 드라마 '비밀의 숲2'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72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0. 8. 15.부터 2020. 10. 4.까지 방영되었고, 넷플릭스에서 이용할 수 있음.
(방송 '어게인 나훈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31512호는 2020. 9. 30. 방영된 KBS2 2020 한가위 대기획 콘서트 '어게인 나훈아'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72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방송 전부터 KBS는 나훈아 콘서트에 대한 온라인 다시보기 서비스나 TV 재방송이 없을 것이라고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불법유통되고 있는 상황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26670호~128034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C 위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동의함. 다만 마찬가지로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같은 의견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037호~13199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1035호는 전체위원회에 회부하고, 안건번호 제2020-131996호~131999호는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0-131025호~131034호 및 안건번호 제2020-131036호~13199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o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

언함.

2020년 제24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0. 26.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